

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연결집단용)

연결사업연도	모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① 요건	② 검토 내용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																				
중 기 업	㉑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㉒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㉓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※ ①·③은 2025. 2. 28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업태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 비율 코드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업 수입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01) ()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1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4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7)</td> </tr> <tr> <td>(02) ()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2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5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8)</td> </tr> <tr> <td>(03) 그 밖의 사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3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6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09)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업태별	구분	기준 비율 코드	사 업 수입금액	(01) ()업	(01)	(04)	(07)	(02) ()업	(02)	(05)	(08)	(03) 그 밖의 사업	(03)	(06)	(09)	계				(17) 적합 (Y) 부적합 (N)	(26)
	업태별	구분	기준 비율 코드	사 업 수입금액																					
	(01) ()업	(01)	(04)	(07)																					
	(02) ()업	(02)	(05)	(08)																					
(03) 그 밖의 사업	(03)	(06)	(09)						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						
㉔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(“평균매출액등” 은 “매출액” 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	가. 매 출 액 - 당 회사(10) () 억원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) 억원 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) 억원		(18) 적합 (Y) 부적합 (N)	적합 (Y)																					
㉕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㉑)의① 기준) 이내일 것		(19) 적합 (Y) 부적합 (N)	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		
㉖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㉑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 사업연도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)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 사유발생 연도(13) () 년		(20) 적합 (Y) 부적합 (N)	(27)																					
소 기 업	㉗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㉑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㉒)을 충족하는지 여부		(21) 적합(Y), 부적합(N)	(27) 적합 (Y)																				
	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,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 (“평균매출액등” 은 “매출액” 으로 봄)내다) 이내일 것	○ 매 출 액(14) - 당 회사(14) () 억원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) 억원 이하		(22) 적합(Y), 부적합(N)	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	

구분	① 요건	② 검토 내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						
중 견 기 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적합(Y), 부적합(N)	(28) 적합 (Y) 부적합 (N)						
	⑪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) 	(24) 적합(Y), 부적합(N)							
	⑫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[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직전 3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직전 2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직전 1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평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억원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억원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억원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억원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전 3년	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(억원)	(억원)	(억원)
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					
(억원)	(억원)	(억원)	(억원)				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- *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「법인세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*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“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별지 제51호서식)”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- 1. 제1쪽 ① 요건의 ㉓ 사업요건란 ②에서 ‘소비성 서비스업’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, ㉓ 사업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는 사업 내용을 적습니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(兼營)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.
 -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),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), 무도장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「관광진흥법」 제5조 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합니다),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, 마사지업
- 2. 제1쪽 ㉓ 독립성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‘관계기업’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.
- 3. 제1쪽 ㉓ 유예기간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‘사유발생 연도(13)’에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4. 제1쪽 및 제2쪽의 ③ 적합 여부란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“적합(Y)” 또는 “부적합(N)”에 체크합니다. 이 경우 제2쪽의 (25)란은 ㉓란에 따른 ① ~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“적합(Y)”에 체크하며, ㉓란에 따른 ① ~ ③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.
- 5.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(26)란은 ㉓ 사업요건란 · ㉔ 규모요건란 · ㉕ 독립성요건란에 따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, ㉓ 유예기간란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“적합(Y)”에 체크합니다.
- 6.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(27)란은 ㉖란 및 ㉗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“적합(Y)”에 체크합니다.
- 7. 제2쪽 ④ 적정 여부의 (28)란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[제1쪽 (26)란에서 “부적합(N)”으로 체크된 기업]으로서 ㉘란, ㉙란 및 ㉚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“적합(Y)”에 체크합니다.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(“평균매출액등”은 “매출액”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	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27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	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6. 가구 제조업	C32		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	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	
8. 광업	B		32. 운수 및 창고업	H		
9. 식료품 제조업	C10		33. 정보통신업	J		
10. 담배 제조업	C12		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41. 금융 및 보험업	K	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42. 부동산업	L	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43. 임대업	N76	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44. 교육 서비스업	P		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			
22. 수도업	E36					
23. 건설업	F					
24. 도매 및 소매업	G					

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

작성 방법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	
2. 음료 제조업	C11		19. 광업	B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20. 담배 제조업	C12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5. 코르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29. 건설업	F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30. 운수 및 창고업	H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31. 금융 및 보험업	K		
15. 가구 제조업	C32		32. 도매 및 소매업	G		평균매출액등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33. 정보통신업	J		5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제외)	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		35. 부동산업	L			
		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	
		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	
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	
		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		
	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10억원 이하		
		41. 교육 서비스업	P			
		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	
		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	

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